

한천수계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보상계획공고

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일원 한천수계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. 04. 14.

예 천 군



1. 사업개요

사 업 명	사업 대상지	사업개요	보 상 계 획
한천수계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	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일원	도심하천 복원 L=355m	- 2개 감정평가기관(토지소유자 추천시 3개)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로 산정후 개별통지 - 보상시기 : 열람 및 감정 평가 후 개별통지(2014년 5월부터 보상협의)

※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(1인)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.

2. 사업시행자 : 예천군수

3. 사업기간 : 2014년 ~ 2017년

4.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

가. 기 간 : 2014. 04. 14. ~ 2014. 05. 02. (공휴일포함 14일 이상)

나. 장 소 : 예천군청 건설과(☎054-650-6341, 6560)

5. 보상 대상

가. 토지 및 물건내용 :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

소 재 지	편입토지 지번(토지내 지장물 지번 포함)								
예천읍 백전리	450-5	447-4	447-48	447-31	447-29	447-18	94-54	94-31	63-17
	220-13	447-1	447-37	447-50	94-22	447-26	447-20	447-42	63-10
	220-14	447-53	447-9	94-57	447-16	64-4	64-22	447-23	63-13
	448	447-6	447-36	444-3	64-21	447-25	94-55	63-4	63-12
	447-2	219-1	447-35	67-16	64-6	447-19	94-56	447-22	62-4
	219-2	447-5	68-8	64-8	447-17	64-3	94-11	94-27	299
	447-46	447-8	68-1	447-15	64-20	447-24	64-1	94-7	299-1
	447-45	447-47	447-33	64-7	64-5	64-24	447-43	94-8	432-1
	447-3	447-38	447-32	94-23	64-10	64-2	64-19	63-3	432-9
예천읍 생천리	721-44								

나. 세부목록 열람 : 예천군청 건설과 도시계획담당에서 열람하고, 개인별(소유자 및 이해관계인) 보상대상은 개별통지 함.

6. 보상 절차

가.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→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→손실보상협의→수용재결(협의 불성립시)→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

나.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3조,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7. 기타사항

가. 보상시기 및 보상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토지·물건별 개별 보상금액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.

나. 열람결과 소유권 및 권리관계, 기타사항 등이 열람한 조서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

라. 기타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군 건설과 도시계획담당(☎054-650-6341, 6560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